

수원고등법원 2021. 9. 8 선고 2021나10889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재판경과

수원고등법원 2021. 9. 8 선고 2021나10889 판결

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. 11. 26 선고 2019가합104759 판결

전문

원고, 피항소인 신용보증기금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씨에스담당변호사 정우근

피고, 항소인 B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누리담당변호사 김주현

변론종결 2021. 8. 25.

판결선고 2021. 9. 8.

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. 11. 26. 선고 2019가합104759 판결

주문

1.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2.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청구취지

피고와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8. 8. 14. 체결된 매매계약을
취소한다. 피고는 D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
2018. 8. 20. 접수 제2419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 항소취지
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,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
이 유

1. 제1심 판결의 인용

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
이유(제1심 공동피고 A에 대한 부분 제외)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
그대로 인용한다.

○ 피고는 당심에서 이 사건 구상금채권 중 일부가 변제되었으므로 이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고
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. 피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구상금채권 중 일부가 변제되었다고 하여도
위 채권이 전부 소멸하지 않은 이상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청구에
영향을 미칠 수 없다. 이 사건 구상금채권이 전부 소멸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
받아들일 수 없다.

2. 결론

그렇다면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
판결한다.

재판장 판사 김복형, 판사 허양윤, 판사 정현식

별지